# 아동기본법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4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 강훈식·허 영·조 국

문진석 • 윤종군 • 김우영

김영진 · 진성준 · 모경종

정준호 · 김성회 · 신영대

임미애 · 이개호 · 민형배

의원(15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 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으로서 협약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당사국의 구체적 입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함. 또한 특정 정책에 따른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은 부처 간 협력의 어려움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 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와 사각 지대 발생의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아동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짐(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마.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 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7조).

-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아동안전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8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9조).
- 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정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의 구제·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을 두고,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아동기본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의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거나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아동이 안정된 환경 에서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가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아동의 권리 보장 등 아동정책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아동의 권리 보장 등 아동정책 관련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익,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의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동의 최 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예산과 담당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 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의 책무) ① 기업은 모든 경영 활동에 있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업은 아동의 권리 존중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보호아동 지원) ①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난민아동, 북한 이탈아동,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학교 밖 아동, 범죄피해아동, 사법 절차상의 아동, 보호대상아동, 가족돌봄아동 등을 포함해 취약하거나 소외된 상황에 처한 모든 아동(이하 "특별보호아동"이라 한다)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그 고유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보호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여 관련 정책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2장 아동의 권리 보장

제10조(생존권) 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

- ②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아동은 친생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와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아동은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⑤ 아동은 출생 전 후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⑥ 아동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⑦ 아동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출생지역 등과 관계없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⑧ 아동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의료행위에 대한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고 치료방법이 아동 눈높이에 맞게 설명되어야 한다.
- 제11조(보호권) ① 아동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체벌, 집단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등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학

- 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아동은 제1항에 따른 폭력과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및 이로 인해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경우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전문상담가의 조력 등 국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아동은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심리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업무·고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아동은 자신의 책임 없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⑤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고 인격 또는 명예를 침해받거나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발달권) ① 아동은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아동은 인격, 재능 및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아동은 차별 없는 교육 여건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④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아동은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⑥ 아동은 발달에 필요한 쉴 권리와 놀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참여권) ①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아동은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③ 아동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④ 아동은 쉬운 언어와 형식으로 이루어진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⑤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⑥ 아동은 신체적·정서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등과 관계없이 참 여권을 보장받는다.
- ⑦ 아동은 아동정책의 형성·집행·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3장 아동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14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하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4. 재원조달방안
- 5. 특별보호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 6. 아동정책에 관한 관한 교육 및 홍보
- 7.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제17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지역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4.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5. 아동의 권리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6.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 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

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환경부장관

- 2. 경찰청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3.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아동권리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4. 아동대표
- ④ 위원회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 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 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9조(아동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 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아동의 권리구제 등

- 제20조(권리구제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권리 침해 예방과 개선·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정책 등을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침해의 구 제·개선을 위한 아동권리옹호관을 둔다.
  - ③ 아동권리옹호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아동권리 침해상황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2. 시정 등 개선안 권고
  - 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제도 개선 요구
  - ④ 제2항에 따른 아동권리옹호관의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21조(아동친화적 사법절차) ① 국가는 아동친화적 사법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사법절차에서 아동이 의사를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행정절차에서 아동은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주어져야한다.
- 제22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1. 아동의 권리교육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 2. 아동의 권리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비용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